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부록 제722호 2012. 11. 23.(금)

##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7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2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9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0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1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42

###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0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49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09호(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60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0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97

###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4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 100

### 【예 규】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 제68호(인천광역시연수구법제사무처리지침 폐지지침) ... 112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 제69호(인천광역시연수구법령질의및회시지침 폐지지침) ... 114

###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81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116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81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0

|   |  |  |  |  |  |  |  |
|---|--|--|--|--|--|--|--|
| 회 |  |  |  |  |  |  |  |
| 람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지역사회복지협의체<br>운영조례 일부개정<br>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협의체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로 개정</li> <li>- 제3조제5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으로 개정</li> </ul> <p>○ 대표협의체 구성 자격 조건 중 법령 오기로 인한 근거법령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법」” 을 “「사회복지사업법」” 으로 개정</li> </ul>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2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법」” 을 “「사회복지사업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친환경상품 구매<br>촉진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4.5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p> <p>○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p>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3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호,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지방공무원 복무 조례<br>일부개정조례 | <div style="margin-bottom: 20px;"> <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li> <li>○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조사별 휴가 일수 조정과 여성보건휴가 유급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 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li> </ul> </div> <div>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제22조)</li> <li>○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제23조제3항)</li> <li>○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건강을 위한 기준 마련(제23조제4항)</li> <li>○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별표 3)</li> </ul> </div>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4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2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 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5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지하수조례 일부개정<br>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li> <li>○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환급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불합리한 사항이 존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권고 요청이 있어 우리 구 지하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제5조의2)</li> <li>○ 부담금 감면·면제시 공개제 도입(제16조의2)</li> <li>○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제17조의2)</li> <li>○ 부담금부과에 불복시 납부의무자의 충분한 권리를 위한 이의 신청 기간의 연장(제19조 및 제23조)</li> <li>○ 부담금의 환급방법·절차, 환급가산금(이자)의 법적 근거 명확화(제19조의2)</li> </ul>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5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규칙”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규칙”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전액 면제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20%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와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및 감면금액 지급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
2. 구 또는 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50%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9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 을 “법 제41조” 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44조제3항 별표8” 을 “영 제44조 별표7”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30일” 을 “60일” 로 한다.

제26조 중 “과태료의” 를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지진피해 시설물 위<br>험도평가단 구성 및<br>운영에 관한 조례 |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li> <li>○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li> <li>○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제5조)</li> <li>○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li> <li>○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li> </ul>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6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이하 “위험도 평가” 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연수구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위험도 평가단원” 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연수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연수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단의 규모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 등에 따라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⑤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 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⑦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연수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연수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연수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

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      |  |       |  |
|------|--|-------|--|
| 회원번호 |  | 신 청 일 |  |
|------|--|-------|--|

|                                                                                                                                                                                                                                                                                                                                |  |      |                 |
|--------------------------------------------------------------------------------------------------------------------------------------------------------------------------------------------------------------------------------------------------------------------------------------------------------------------------------|--|------|-----------------|
| 성 명                                                                                                                                                                                                                                                                                                                            |  | 주민번호 |                 |
| 소 속                                                                                                                                                                                                                                                                                                                            |  | 직 급  |                 |
| 주소 : (       -       )                                                                                                                                                                                                                                                                                                         |  |      | 전화 : (       )  |
|                                                                                                                                                                                                                                                                                                                                |  |      | FAX : (       ) |
| E-mail :                                                                                                                                                                                                                                                                                                                       |  |      |                 |
| 전문분야 :<br><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br><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br><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br>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br><br><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20    년            월            일<br/>           신 청 인 :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b> </div> |  |      |                 |

210mm×297mm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하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2-810-79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 서식]

|                                                     |      |
|-----------------------------------------------------|------|
|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 〈빨강〉 |
| <b>위험!</b>                                          |      |
|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
| <input type="checkbox"/> 평가자 :                      |      |
| <input type="checkbox"/> 평가일시 :                     |      |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      |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br>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br>( Tel : 032-810-7981 )        |      |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                                                     |      |
|-----------------------------------------------------|------|
|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 〈노랑〉 |
| <b>사용제한</b>                                         |      |
|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
| <input type="checkbox"/> 평가자 :                      |      |
| <input type="checkbox"/> 평가일시 :                     |      |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      |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br>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br>( Tel : 032-810-7981 )        |      |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32-810-7981 )

210mm×297mm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32-810-7981 )

210mm×297mm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고문변호사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 확대</p> <p>-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제1항 제3호)</p> <p>○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사항 규정</p> <p>-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제4조)</p>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7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제8조 관련)

| 구 분          | 지 급 기 준                |                     | 승 소 사 례 금                                                                                                                                                                               |
|--------------|------------------------|---------------------|-----------------------------------------------------------------------------------------------------------------------------------------------------------------------------------------|
|              | 내 용                    | 착 수 금               |                                                                                                                                                                                         |
|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200,000원            | 없 음                                                                                                                                                                                     |
|              | 변론이 있는 경우              | 400,000원            |                                                                                                                                                                                         |
| 민사소송<br>행정소송 |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 800,000원            | 1. 전부승소 시<br>착수금의 150%<br><br>2. 50%이상 승소<br>시에는 전부승소<br>시 금액에 승소<br>율을 곱한 금액<br><br>3. 화해, 인락, 소<br>취하 등의 경우<br>에는 착수금의<br>2분의 1                                                       |
|              |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1,000,000원          |                                                                                                                                                                                         |
|              |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1,500,000원          |                                                                                                                                                                                         |
|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2,000,000원          |                                                                                                                                                                                         |
|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2,500,000원          |                                                                                                                                                                                         |
|              | 2억원이상 3억원미만            | 3,000,000원          |                                                                                                                                                                                         |
|              | 3억원이상 4억원미만            | 3,500,000원          |                                                                                                                                                                                         |
|              | 4억원이상 5억원미만            | 4,000,000원          |                                                                                                                                                                                         |
|              | 5억원이상                  | 4,500,000원          |                                                                                                                                                                                         |
|              | 상소심                    | 본안소송 착수금<br>지급금액    |                                                                                                                                                                                         |
| 형사사건         | 환송사건                   | 본안소송 착수금의<br>1/2 이내 | 1. 고소·고발 시 검찰수사<br>결과 기소될 경우 착수금<br>의 100%<br>2.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br>수사 결과 불기소 될<br>경우 착수금의 120%<br>3.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br>수사 결과 기소유예될<br>경우 착수금의 80%<br>4.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br>종결된 경우 착수금의<br>2분의 1 |
|              | 1. 개인 단독사건             | 1,000,000원          |                                                                                                                                                                                         |
|              | 2. 다수 관련사건             | 2,000,000원          |                                                                                                                                                                                         |
|              |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br>사건 | 3,000,000원          |                                                                                                                                                                                         |
| 기 타          | 1. 인 지 대               | 실 액                 |                                                                                                                                                                                         |
|              | 2. 송 달 료               | 실 액                 |                                                                                                                                                                                         |
|              | 3. 검 증 비               | 실 액                 |                                                                                                                                                                                         |
|              | 4. 감 정 료               | 실 액                 |                                                                                                                                                                                         |
|              | 5. 기타비용                | 실 액                 |                                                                                                                                                                                         |

※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자치법규의 입법에<br>관한 조례 | <p>□ 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하고,</li> <li>○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수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li> </ul>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li> <li>②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li> <li>③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li> </ul> </li> <li>☞ <u>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u></li> <li>○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수의 기준을 하향 하여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당초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개정</u></li> </ul> </li> </ul>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8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주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제4조(입법안 작성)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장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

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등)**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

③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치법규 등의 공포

**제13조(조례의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규칙의 공포 등)** ①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 예산·결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구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등

제19조(자치법규의 정비)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의회 행정사무감사<br>및 조사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폐회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제9조의2)</p>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9호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폐회 중 자료제출요구 등) ① 의장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필요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의회 회기와 그 운영<br>등에 관한 조례 일부<br>개정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br/>조례 제4조에서 특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제1차<br/>정례회 집회일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여<br/>연수구 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br/>조례 제4조에서 매년 7월1일과 11월 25일로 규정하고<br/>있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br/>매년 6월 또는 7월중과 11월 또는 12월중으로 개정.</p>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0호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월 1일”을 “6월 또는 7월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월 25일”을 “11월 또는 12월 중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담당) 공무원까지로 확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의 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동 조례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담당) 공무원까지로 확대</p>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1호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출석,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6급(담당) 또는 동일직급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여성친화도시 조성에<br>관한 조례 |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p>○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규정(제1조~제4조)</p> <p>○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5조 ~ 제7조)</p> <p>○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제8조~제17조)</p> <p>○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8조~제22조)</p> |

인천광역시연구회의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구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구회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구회 조례 제782호

## 인천광역시연구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구회(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5. “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담당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협 예방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8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된 연수구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소송사무처리 규칙<br>일부개정규칙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민사소송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규칙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소송 사건에 대비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직무관련사건 내용 신설(제5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및 업무처리 절차, 소요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li> <li>- 별지 서식 제10호(확약서) 및 제11호(변호인선임신고서) 신설</li> </ul> <p>○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 변경(별지 제1,2,4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0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근거 법령 변경</li> </ul> |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08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5장(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직무관련사건

- 제25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의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26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제27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소 송 위 임 장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 소 송 위 임 장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 대표자 구청장 000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신 청 서

1. 사 건

2. 당사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 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 대표자 구청장 000

법원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 확 약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000과 공무원 甲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법제사무 처리 규칙 |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여러 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법제사무 관련 규정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법제사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제사무에 관한 규칙, 훈령 및 예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li> <li>② 법제사무처리지침</li> <li>③ 법령질의 및 회시지침</li> </ul> </li> <li>☞ <u>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u></li> </ul>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법규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서식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입법에 관한 사항 신설</li> </ul> </div> |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09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를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자치법규·훈령·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제4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예산조치사항 및 비용추계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심사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요약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의 협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입법안 방침결재 사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승인·인가를 입법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인가문의 사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제심사)** ①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입법 선례와의 비교,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리 등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입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이 조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중요문서의 심사

제11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문서
2. 예규문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고시·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심사대상 문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4장 조례·규칙심의회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각 분야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안·예규안
6.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7.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주관부서에서 입법안 확정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10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

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0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입법안의 처리절차 등

**제25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 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 훈령 및 예규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준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 제6장 공포 및 시행

**제27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한 후 수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8조(공포 및 발령)** ①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업무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9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련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장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회시

**제30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구 본청 주관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이나 소관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그 이유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31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두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제32조(질의문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7.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3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회시)**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2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

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35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의 경우)

※ 전부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주요 내용 작성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실·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실·과(전화 : ○○○-○○○○○~○, FAX : ○○○-○○○○○, E-mail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 개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 서식]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 검 토 구 분              |                                                                                                                        | 有       | 無 |
|----------------------|------------------------------------------------------------------------------------------------------------------------|---------|---|
| 검 토 사 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실·과·소·동별 의견수렴 결과     |                                                                                                                        |         |   |
| 수 렴 기 간              | 제 출 의 건                                                                                                                | 검 토 내 용 |   |
| ○ 기 간<br>- ~         |                                                                                                                        |         |   |
| ○ 내 용<br>- 의견수렴      |                                                                                                                        |         |   |
| 입 법 예 고 결 과          |                                                                                                                        |         |   |
| 예 고 기 간              | 제 출 의 건                                                                                                                | 검 토 내 용 |   |
| ○ 기 간<br>- ~         |                                                                                                                        |         |   |
| ○ 방 법<br>- 구보게재 및 기타 |                                                                                                                        |         |   |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 (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실·과·소·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 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 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사유서                                                                                                                                                                                                                                                                                                                                                                                                                                                                                                                                                                                                               |                                                                                                                                                                                                |      |  |
|-----------------------------------------------------------------------------------------------------------------------------------------------------------------------------------------------------------------------------------------------------------------------------------------------------------------------------------------------------------------------------------------------------------------------------------------------------------------------------------------------------------------------------------------------------------------------------------------------------------------------------------|------------------------------------------------------------------------------------------------------------------------------------------------------------------------------------------------|------|--|
| 제 명                                                                                                                                                                                                                                                                                                                                                                                                                                                                                                                                                                                                                               |                                                                                                                                                                                                | 주관부서 |  |
| 분 류                                                                                                                                                                                                                                                                                                                                                                                                                                                                                                                                                                                                                               | 1. (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br>2. (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br>3. (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br>4. (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br>5. (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div style="margin-bottom: 20px;"> <input type="checkbox"/>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br/> <input type="radio"/> (서술식으로 작성)                     </div> <div> <input type="checkbox"/> 향후 일정                     <div style="margin-left: 20px;"> <input type="radio"/> 관련부서 협의 : 20 . . . ~ . . .<br/> <input type="radio"/> 입법예고 : 20 . . . ~ . . .<br/> <input type="radio"/> 법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 . . ~ . . .<br/> <input type="radi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 . .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30px;">                         ○○○○실·과장   ○   ○   ○                     </div> |                                                                                                                                                                                                |      |  |

[별지 제4호 서식]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협의 결과통보서

###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을 기재)

###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사유

○ 조정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 ☐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결과 : (생략·단축 가능/불가로 구분하여 기재)

○ 검토의견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                                                                                                                                                                                             |  |
|---------------------------------------------------------------------------------------------------------------------------------------------------------------------------------------------|--|
| 제명                                                                                                                                                                                          |  |
| <div>【주요내용】</div> <div>○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기술)</div> <div>【쟁점사항】</div> <div>○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하여 기술)</div> <div>【검토의견】</div> <div>○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기재)</div> |  |

[별지 제6호 서식]

##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 심의일시 : (일시) / (장소)

☐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참석

☐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 순번 | 안 건 명             | 심의의결사항   |          |           |    |    |
|----|-------------------|----------|----------|-----------|----|----|
|    |                   | 원안<br>가결 | 수정<br>가결 | 조건부<br>가결 | 보류 | 부결 |
| 1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          |           |    |    |
| 2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          |           |    |    |
| 3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          |           |    |    |
| 4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          |           |    |    |
| 5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          |           |    |    |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음.

심의위원

성명 : \_\_\_\_\_

서명 : \_\_\_\_\_

# 안 건 심 의 내 용

| 안 건 명             | 원 안                                                                                                                                                      | 수 정 안                         | 조 건 부 |
|-------------------|----------------------------------------------------------------------------------------------------------------------------------------------------------|-------------------------------|-------|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input type="checkbox"/> 가결<br><input type="checkbox"/> 수정<br><input type="checkbox"/> 조건부<br><input type="checkbox"/> 보류<br><input type="checkbox"/> 부결 | _____을(를)<br>_____으로<br>수정한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input type="checkbox"/> 가결<br><input type="checkbox"/> 수정<br><input type="checkbox"/> 조건부<br><input type="checkbox"/> 보류<br><input type="checkbox"/> 부결 | _____을(를)<br>_____으로<br>수정한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input type="checkbox"/> 가결<br><input type="checkbox"/> 수정<br><input type="checkbox"/> 조건부<br><input type="checkbox"/> 보류<br><input type="checkbox"/> 부결 | _____을(를)<br>_____으로<br>수정한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input type="checkbox"/> 가결<br><input type="checkbox"/> 수정<br><input type="checkbox"/> 조건부<br><input type="checkbox"/> 보류<br><input type="checkbox"/> 부결 | _____을(를)<br>_____으로<br>수정한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input type="checkbox"/> 가결<br><input type="checkbox"/> 수정<br><input type="checkbox"/> 조건부<br><input type="checkbox"/> 보류<br><input type="checkbox"/> 부결 | _____을(를)<br>_____으로<br>수정한다. |       |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 <input type="checkbox"/> 가결<br><input type="checkbox"/> 수정<br><input type="checkbox"/> 조건부<br><input type="checkbox"/> 보류<br><input type="checkbox"/> 부결 | _____을(를)<br>_____으로<br>수정한다. |       |

[별지 제7호 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안전 상정서식

### <순 서>

1. 작성서식
2. 작성방법
3. 입법안
  - 가. 제정안
  - 나. 전부개정안
  - 다. 일부개정안
  - 라. 폐지안
4. 신·구조문 대비표
5. 관계법령 발췌사항
6. 비용추계서
7. 기타 사항

1. 작성서식

| 의 안 번 호      | 제 호                 |
|--------------|---------------------|
| 의 결<br>년 월 일 | 20 . . .<br>( 제 회 ) |

심  
의  
의  
결  
사  
항

(자치법규안 제명)

|       |          |
|-------|----------|
| 제 출 자 | 과장       |
| 제출년월일 | 20 . . . |

법무의회담당 심사필

## 제 명

### 1. 의결주문

○

### 2. 제안이유

○

○

### 3. 주요내용

○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2) 비용추계 :

(3) 부패영향평가 :

(4) 성별영향평가 :

○ 기 타 :

(1) 입법예고 (20 . . . ~ . . .) 결과: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개정인 경우)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 2. 작성방법

### 가. 표지

- 1) 의안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기획감사실에서 기재함)
- 2) 의결날짜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날짜 및 연도별 회차 (기획감사실에서 기재함)
- 3) 안 건 명 :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 작성함
- 4) 제 출 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 5) 제출날짜 : 안건을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날짜 기재

### 나. 본문

- 1) 의결주문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로 작성한다.
-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정, 개정, 폐지의 목적, 배경,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 나. ○○○을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을 xx으로 변경함(안 제○○조)
    - 다.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하도록 함(안 제○○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실·국·본부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관계법령 : 「○○○법」, 「△△△법」
    -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기재(비용추계자료 별첨)
    - 다) 합의사항 : ○○○실(본부·국)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 . . . ~ . . .) 결과 : 별첨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 3. 입법안

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적용범위) -----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중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신·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 신·구조문 대비표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나.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다. 작성방법

-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 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 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으로만 하면 된다.
-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 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 로 한다.
-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5.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관계법령 제명)

해당 조문 및 내용 기재

<예시>

###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6. 비용추계서

###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 

##### 나. 추계 결과

- 

#####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 년도별<br>재원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 | 2016 |
|------------|-------|-------|-------|------|------|
| 국비         |       |       |       |      |      |
| 구비         |       |       |       |      |      |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 ※ 작 성 요 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br>(2012년) | 2차년도<br>(2013년) | 3차년도<br>(2014년) | 4차년도<br>(2015년) | 5차년도<br>(2016년) | 계 |
|---------------------|-------|-----------------|-----------------|-----------------|-----------------|-----------------|---|
| 세 입                 |       |                 |                 |                 |                 |                 |   |
| 사회복지 인건비            |       |                 |                 |                 |                 |                 |   |
| 세 출                 |       |                 |                 |                 |                 |                 |   |
| 총액인건비               |       |                 |                 |                 |                 |                 |   |
| 재원 조달               |       |                 |                 |                 |                 |                 |   |
| 의존원<br>재원           | 소 계   |                 |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자체<br>수입            | 지방세 등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br>(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7. 기타 사항

가. 시 사전보고 서식(조례, 규칙 해당)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명 :

|                     |                                          |        |                        |
|---------------------|------------------------------------------|--------|------------------------|
| 제안자                 | 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     |        |                        |
| 규제개혁위원회             | 제 회 ( ‘12.     .     )                   | 규제심사결과 | 신설, 강화, 폐지, 완화<br>중 선택 |
| 조례규칙심의회             | 제 회 심의회 ( ‘12.     .     . )             |        |                        |
| 의회 의결일              | ‘12.     .     .                         | 이 송 일  | ‘11.     .     .       |
| 공포 예정일<br>(공포게시예정일) | ‘12.     .     .<br>( ‘12.     .     . ) | 재의요구기한 | ‘11.     .     .       |
| 근거 법령               | 0000법, 0000법 시행령                         |        |                        |
| 소관 부서               | 0000과(담당자 : 000, ☎ 810-0000)             |        |                        |
| 관련광역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0000과                              |        |                        |
| 제정·개폐사유             | ○<br>○                                   |        |                        |
| 주요내용                | ○<br><br>○                               |        |                        |
| 검토의견                |                                          |        |                        |

나. 의회 상정 서식(조례만 해당)

## 인천광역시연구 00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
|------|--|

제출일자 2012.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구청장

### 1. 제안이유

- 
- 

### 2. 주요내용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부서 :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총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기타안건 건)

. . . ( ) : 00

| 순번 | 의안번호 | 제출부서 | 의안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한 순번대로 등재 · 부여
-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별 주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 법령해석요청서

### 1. 질의요지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2 이상인 경우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

###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 6. 기타 참고자료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의회 회의규칙 일부<br>개정규칙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조례안 입법예고,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함(제19조의2)</p> <p>○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발언자에게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33조의2)</p> <p>○ 구정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66조의2)</p>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0호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를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 할 수 없다.”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p>인천광역시연수구<br/>법제사무 처리<br/>규정</p> | <p><input type="checkbox"/> 제정이유</p> <p>○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제사무에 관한 훈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제사무에 관한 규칙, 훈령 및 예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 도모</p> <p style="padding-left: 20px;">① 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등사무처리규정</p> <p style="padding-left: 20px;">② 법령집등보관및가제정리규정</p> <p style="padding-left: 20px;">☞ <u>법제사무 처리 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u></p> <p>○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정비 추진 절차를 도표화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제5조 및 별표 1)</p> |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41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제청구에 따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자치법규 등”이란 구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 등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자치법규 등의 정비

**제4조(정비추진계획)** ① 기획감사실장은 매년 초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제정·개정·폐지해야 할 자치법규 등의 정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로 입안해야 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정비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계획대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당초의 정비계획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며,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자치법규 등의 입안형식 및 정비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정비 추진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순서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의 정비 추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훈령 및 예규안의 정비 추진 절차는 규칙 입법안의 정비 추진절차를 준용한다.

##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7조(사무분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는 별표 3과 같이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8조(접수 및 이송)** ① 청구인의 대표자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문서로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한다.

② 민원지적과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청구서의 내용과 관련되는 주관부서(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9조(공표의 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구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병행하여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② 구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공고할 때에는 7일 이상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서명자인지 여부 등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7일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민원지적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신속하게 관계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서명여부에 대하여는 표본추출에 의한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안전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명부 중 서명자의 무효결정

2.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3.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7조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여부
  2. 법령과의 저촉여부
  3.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4.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5.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6.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12조(조례안의 구의회 부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 의결을 거친 주민청구조례안을 구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서식의 비치)** 민원지적과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에 따른 관련 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는 구청 주관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실로 한다.  
 ② 청구인명부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명부의 사본을 필요한 만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의 유지)** 기획감사실장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처리사

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지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원활하게 처리를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제4장 보고

**제17조(조례안 보고)**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이송일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안 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공포 예정 15일 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재의 및 제소결과의 보고)** ① 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 사실 및 의회의 재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한 때 및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공포 및 발령 등

**제20조(자치법규의 공포 등)** 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21조(원본 등의 관리)** ① 조례 및 규칙의 원본은 조례·규칙별, 공포 순서별로 편철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훈령 및 예규의 원본은 조례·규칙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되, 훈령·예규 별 발령 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번호부여대장)** ①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조례·규칙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리하여 편철하지 아니한다.

②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훈령·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리하여 편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기획감사실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법령집 등의 관리)** ① 법령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대한민국헌행법령집 : 종이법규집

2.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 전자법규집

② 전자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서비스를 말한다.

③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에 각 1부씩 종이법규집으로 관리·보관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은 전자법규집으로 관리하며, 공포 또는 발령일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내용을 수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등사무처리규정」
2. 「인천광역시연수구법령집등보관및가제정리규정」

[별표 1]

자치법규 입안기준(제5조 관련)

| 입안기준             | 주요 내용                                                                                                                                                                                                                                                |
|------------------|------------------------------------------------------------------------------------------------------------------------------------------------------------------------------------------------------------------------------------------------------|
| 입법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주민의 요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
| 입법형식의 적절성        | <input type="checkbox"/> 법령에서 위임 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하여야 하거나 직권에 의한 입법의 경우에 조례 또는 규칙의 자치법규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
|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input type="checkbox"/> 헌법의 기본정신인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br><input type="checkbox"/> 집행기관·의결기관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br><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input type="checkbox"/>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여부                                                                                                                                                                            |
|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input type="checkbox"/>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br><input type="checkbox"/>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였는지 여부                                                                |



[별표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사무분장 (제7조 관련)

| 사무처리<br>부 서 | 사 무 의 내 용                                                                                                                                                                                                                                                                                                                                                                                                                                                                                                                                                                                                                            | 근 거 법 령                                                                                                                                                                                                               |
|-------------|--------------------------------------------------------------------------------------------------------------------------------------------------------------------------------------------------------------------------------------------------------------------------------------------------------------------------------------------------------------------------------------------------------------------------------------------------------------------------------------------------------------------------------------------------------------------------------------------------------------------------------------|-----------------------------------------------------------------------------------------------------------------------------------------------------------------------------------------------------------------------|
| 기 획<br>감사실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사무의 처리지도 및 교육<br>○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br>○관련 주관부서가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br>○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사항의 기록 유지                                                                                                                                                                                                                                                                                                                                                                                                                                                                                                                | 영 제16조제4항·제5항<br>영 제17조제1항                                                                                                                                                                                            |
| 민 원<br>지적과  |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공표 및 보고<br>○청구인명부 중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여부, 수형인 명표 등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명여부 및 본인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br>○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즉시 관련 주관부서 이송<br>○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                                                                                                                                                                                                                                                                                                                                                                                                                       | 영 제11조<br>영 제16조제4항<br>영 제12조제1항<br>「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
| 관 련<br>주관부서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대표자증명서 교부 취지의 공표 및 보고<br>○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 교부<br>○청구인명부 접수 및 청구취지 등의 청구내용의 공표 및 보고<br>○청구인명부 중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통지의 통할(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 여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명여부와 본인의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br>○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비치 및 열람<br>○청구인 명부 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부의 및 결정사항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br>○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br>○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br>○이의신청이 이유 여부(유·무)를 결정한 때의 이의신청자에게 통지<br>○청구인명부에 대한 보정요구<br>○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br>○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br>○청구의 각하 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br>○조례안 제출 및 제안 설명<br>○조례안의 구의회 상정 및 의결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 영 제12조제2항<br>영 제13조제2항<br>영 제15조<br>영 제16조제4항<br>법 제15조제3항<br>영 제16조제1항<br>영 제16조제4항<br>법 제15조제5항<br>영 제16조제5항<br>법 제15조제5항<br>영 제16조제6항<br>영 제17조제1항<br>법 제15조제6항<br>법 제15조제8항<br>「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br>법 제15조제9항 |

1. 근거법령란의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하고, 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말한다.
2. 관련주관부서 :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실·과를 말한다.

[별지 서식]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처리대장

| 접<br>수<br>연 월 일 | 청구인 대표자 |     | 청구인수<br>(명) | 조례의 명칭 또는 청구내용 | 구분 | 수리<br>여부 | 의결 및 공포 |      |
|-----------------|---------|-----|-------------|----------------|----|----------|---------|------|
|                 | 주 소     | 성 명 |             |                |    |          | 의결일자    | 공포일자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제정·개정·폐지를 기재하고, 수리여부란에는 수리·각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법제사무처리지침<br>폐지지침 | <p><input type="checkbox"/> 폐지 이유</p> <p>○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 규칙, 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시행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인천광역시연수구법제사무처리지침은 폐지함<br/>(※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무 처리 규칙 및 규정에 포함됨)</p> |

인천광역시연수구법제사무처리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68호

## 인천광역시연수구법제사무처리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법제사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인천광역시연수구<br>법령질의및회시<br>지침 폐지지침 | <p><input type="checkbox"/> 폐지 이유</p> <p>○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 규칙, 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시행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인천광역시연수구법령질의및회시지침안은 폐지함<br/>(※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포함됨)</p> |

인천광역시연수구법령질의및회시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69호

## 인천광역시연수구법령질의및회시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법령질의및회시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8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급사,사환,청소등 일정부분의 담당하였으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수요가 감소하였고,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05.23)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810-7081, FAX 032-810-7109,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참고자료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

붙임2) 관련법령 발췌사항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81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징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청원경찰법 법률 제10013호 2010.02.04) 취지에 맞게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3. 주요내용

- 징계처분의 근거법조항인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조로 변경

○ 징계의 종류와 기간, 봉급감액 근거(비율)를 개정함

####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12월10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810-7081, FAX 032-810-7109, 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참고자료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1을 줄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 징계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징계의 관할) (생략)</p> <p>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파면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p> | <p>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 징계규칙</p> <p>제1조(목적) -----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br/>-----<br/>-----<br/>-----.</p> <p>제2조(징계의 관할) (현행과 같음)</p> <p>제3조(징계의 종류)</p> <p>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p> <p>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p> <p>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p> |